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8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김예지
성일종 · 김승수 · 김상훈
강대식 · 윤상현 · 나경원
이종배 · 정동만 · 강선영
김성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·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촌지역은 빈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관리주체의 분산과 타용도로의 활용 제한으로 지역 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,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6제1항).

법률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6제1항제1호 중 “공동이용시설”을 “아이돌봄시설·공동이용시설(주민의 문화시설·생활편의증진시설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5조의6(빈집의 매입 및 활용)</p> <p>①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(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1. 생활기반시설·<u>공동이용시설</u>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5조의6(빈집의 매입 및 활용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아이돌봄시설</u> · <u>공동이용시설(주민의 문화시설·생활편의증진시설을 포함한다)</u>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